

2023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신규대조표

규정	현 행	개 정 안	근거
전규정	전 조항 및 항목	신설 조항 및 항목에 의해 조항 및 항목의 번호가 바뀌는 경우 순서는 순연하도록 한다.	개정 신설에 따른 조정
2. 학교생활교육규정			
제2조	제2조【목적】 ② 없음	(신설) 제2조【목적】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법인' 등 포함)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선안
제5조	제5조【포상】 주관부서: 안전자치부	(수정) 제5조【포상】 주관부서: 안전복지부	업무이동
제6조	제6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수정) 제6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② 학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선안
제7조	제7조【의사표현의 자유】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의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수정) 제7조【의사표현의 자유】 ② 학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의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선안

		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수정) ④ 학교는 학교의 장은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장소에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학교생활 인권규정 개선안
제14조	제14조【소지 금지 물품과 검사 등】 ① 학생은 교과활동을 위해 허용된 경우 외에는 흉기류(학용품 이외의 칼이나 공구류 등), 흡연 관련 물품(담배, 라이터 등 화기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환각성 약품 등), 음란물, 도박에 관련된 물건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정) 제14조【소지 금지 물품과 검사 등】 ① 학생은 교과활동을 위해 허용된 경우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허용한 물건 외에는 흉기류(학용품 이외의 칼이나 공구류 등), 흡연 관련 물품(담배, 라이터 등 화기류), 폭죽 등 인화물질 및 전열기,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환각성 약품 등),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대마 등 향정신성 물질이나 환각성 약품, 음란물,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을 담은 물건, 도박에 관련된 물건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생활 인권규정 개선안
	③ 소지품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동성의 교사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수정) ③ 소지품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동성의 교사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실시하되,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학교생활 인권규정 개선안
제23조	제23조【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수정) 제23조【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① 학생은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생활 인권규정 개선안

제25조	<p>제25조【교외 생활】</p> <p>⑧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는 학생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p>	<p>(수정)</p> <p>제25조【교외 생활】</p> <p>⑧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p>	학교생활 인권규정 개선안
제29조	<p>제29조【통신기기 관리】</p> <p>4. 타인의 동의 없이 수업 등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교육, 개인생활 등의 내용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엄금한다.</p>	<p>(수정)</p> <p>제29조【통신기기 관리】</p> <p>4. 타인의 동의 없이 수업 등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교육, 학생 생활, 교내외 활동, 개인생활 등의 내용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엄금한다.</p>	학교 공동체 의견 수렴
제30조	<p>제30조【복장】</p> <p>① 교복은 학교 교복 기준에 맞추어 항상 단정하게 입는다.</p> <p>② 교복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p> <p>③ 동복 상의 바깥에 패딩이나 코트류의 방한 의류를 입을 수 있다. 다만,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가격의 의류는 지양한다.</p> <p>⑤ 여학생의 경우 교복 치마와 바지의 구매나 착용 여부를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p>	<p>(수정)</p> <p>제30조【복장】</p> <p>① 교복은 학교 교복 기준에 맞추어 항상 단정하게 입는다. 입고 교복을 변형하지 않는다.</p> <p>② 교복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과 건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p> <p>③ 학생은 동복 상의 바깥에 패딩이나 코트류의 방한 의류를 입을 수 있다. 다만,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가격의 의류는 지양한다.</p> <p>⑤ 여학생의 경우 교복 치마와 바지의 구매나 착용 여부를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학생은 교복 치마와 바지의 구매나 착용 여부를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p>	학교 공동체 의견 수렴 및 학교생활 인권규정 개선안
제31조	<p>제31조【두발, 화장 등 용모】</p> <p>② 학생의 두발 길이는 제한하지 않으나 학생 스스로 단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한다. 단, 염색이나 펌 등은 교육을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생자치회 등을 통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용 범위를 결정한다.</p>	<p>(수정)</p> <p>제31조【두발, 화장 등 용모】</p> <p>② 학생의 두발 길이는 제한하지 않으나 학생 스스로 단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한다. 단, 염색이나 펌, 헤어제품을 사용한 과도한 머리 모양의 변형 등은 교육을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생자치회 등을 통해</p>	학교생활 인권규정 개선안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용 범위를 결정한다.	
제34조	제34조【기능】 1.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심의 2. 학생 인권 보호 및 학생 징계에 관한 기본 계획 심의 3. 학생 징계 사안 발생에 따른 대처 및 회복적 생활교육 적용 4. 기타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수정) 제34조【기능】 1. 학생 징계에 선도 에 관한 사항 심의 2. 학생 인권 보호 및 학생 징계 선도 에 관한 기본 계획 심의 3. 학생 징계 사안 발생에 따른 대처 및 회복적 생활교육 적용 4. 기타 학생 징계 선도 에 관한 사항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지침
제35조	제35조【구성 및 직무】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인권부장이 되며, 간사는 학년 생활지도계, 위원은 각 학년부장, 보건교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구성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위원회 대표, 위원회의 업무 총괄 2. 부위원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 대행	(수정) 제35조【구성 및 직무】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인권부장 생활교육부장 이 되며, 간사는 학년생활지도계, 위원은 각 학년부장, 보건교사 상담교사 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구성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위원회 대표, 위원회의 업무 총괄 2.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조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 대행	업무이동 및 위원구성 재조직
제41조	제41조【징계 내용의 관리 및 통보】 ③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수정) 제41조【징계 내용의 관리 및 통보】 ③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선안
제47조	제47조【징계 외 생활교육의 방법】 ④ 학생 사안의 유형, 경중에 따라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부장교사, 보건교사, 학교장 또는 교감은 학부모와 상담을 요청하여 실시할 수 있다.	(수정) 제47조【징계 외 생활교육의 방법】 ④ 학생 사안의 유형, 경중에 따라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부장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 학교장 또는 교감은 학부모와 상담을 요청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학교공동체 의견 수렴
제48조	제48조【성찰교실】	(수정)	실질

	<p>② 성찰교실 회부 및 참여 기간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 부서에서 정한다.</p>	<p>제48조【성찰교실】 ② 성찰교실 회부 및 참여 기간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 부서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나 담임교사, 학년부에서 정한다.</p>	<p>담당자와 부서 추가</p>
제50조	<p>제50조【징계 종류】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선도)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선도)에 의거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징계할 수 있다.</p>	<p>(수정) 제50조【징계 종류】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선도-징계)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선도 학생의 징계 등)에 의거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징계할 수 있다.</p>	<p>학교생활교육위원회 관련 규정</p>
제51조	<p>제51조【징계 방법】 ① 학교 내의 봉사 1.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학교 실정에 따라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학생자치부와 학년부의 상담 및 지도를 받는다.</p>	<p>(수정) 제51조【징계 방법】 ① 학교 내의 봉사 1.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학교 실정에 따라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으로 달리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자치부 생활교육부와 학년부의 상담 및 지도를 받는다.</p>	<p>학교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침 및 업무이동</p>
	<p>② 사회봉사 3.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이수확인서 및 생활 일기를 담임교사 확인 후 학생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수정) ② 사회봉사 3.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이수확인서 및 생활 일기를 담임교사 확인 후 학생자치부 생활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특별교육이수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치료 등의 교육과정 이수 4. 특별교육이수는 학생인권부에서 확인 및 지도한다.</p>	<p>(수정) ③ 특별교육이수 나.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 또는 학교장이 학생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한 학내외 특별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콜중독치료, 심리치료 및 상담)을 실시</p>	

		4. 특별교육이수는 학생인권부, 학년부와 생활교육부 에서 확인 및 지도한다.	
	④ 출석정지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전화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수정) ④ 출석정지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전화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담임교사 등은 학생과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제52조	제52조(징계 기준) 학생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4항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수정) 제52조(징계 기준) 학생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4항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단계적 징계 절차로 수정
제52조	제52조(징계 기준) 19항 행위 목격자 및 증언자에 대해 보복행위를 한 경우	(삭제)	학교폭력 사항임
제55조	제55조(재심의 요구) ②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징계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수정) 제55조(재심의 요구) ②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조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안내한다.	학교생활 교육위원회 운영지침
	없음	(신설) 제56조(재심의)① 재심의 신청인용 시 위원회에서 재심을 실시한다. ② 위원회 재심의 관련 유의 사항 1. 원 조치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2.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학교생활 교육위원회 운영지침

	없음	(신설) 제57조[학교장 조치] ① 위원회 재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 결재 ②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통지 ③ 조치 이행	학교생활 교육위원회 운영지침
	없음	(신설) 제58조[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①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행정소송: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학교생활 교육위원회 운영지침
제58조	제58조[징계 경감] ② 학생인권부장은 징계 만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학년부장 및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의 단축을 건의할 수 있다.	(수정) 제61조[징계 경감] ② 학생인권부장 생활교육부장 은 징계 만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학년부장 및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의 단축을 건의할 수 있다.	업무 이동
제59조	제59조[징계 해제] ① 학생인권부장은 학교 내 봉사 및 사회봉사 대상 학생이 징계 만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임교사 및 학년부장과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건의하여 해제할 수 있다.	(수정) 제62조[징계 해제] ① 학생인권부장 생활교육부장 은 학교 내 봉사 및 사회봉사 대상 학생이 징계 만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임교사 및 학년부장과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건의하여 해제할 수 있다.	업무 이동
제66조	제66조[개정안 발의] ② 단, 제1항의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수정) 제69조[개정안 발의] ② 단, 제1항의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협의 과정을 거쳐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 으로 중요 지침 변경, 교육공동체의 요구 등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개정안 발의 시점 탄력적으로 조정
제68조	제68조[검토 및 의견 수렴]	(수정)	학생생활

	① 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검토 및 의견 수렴】 ① 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학생자치활동(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 설문조사, 토론회, 학부모회, 가정통신문 ,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인권규정 개선안
부칙	부 칙 1.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칙은 학생생활인권규정 맨 끝장에 기입함.	순서 이동
2. 학생자치회 규정			
제10조	제10조【임원】 3. 각 부의 부장	(수정) 제10조【임원】 3. 각 부의 부장 및 차장	누락 임원 추가
제14조	제14조【각 부】학생자치회 조직 및 부서의 편성은 학생자치회와 학급 임원들의 회의를 통하여 직접 결정한다.	(수정) 제14조【각 부】학생자치회 조직 및 부서의 편성은 학생자치회와 학급 임원들의 학생자치회장단이 회의를 회의와 서류전형·면접을 통하여 직접 결정한다. 조직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학생자치회 의견수렴 후 선출 방식 변경 및 부서명 변경
	<pre> graph TD A[] --- B[체육부] A --- C[환경미화부] A --- D[봉사부] </pre>	(수정) <pre> graph TD A[] --- B[체육부] A --- C[환경미화부] A --- D[봉사부 홍보 미디어부] </pre>	
제16조	제16조【적용】 1. 회장 1명 (3학년)(단, 2021학년은 3학년 또는 2학년으로 할 수 있다.) 2. 부회장 2명 (3학년 1명, 2학년 1명)(단, 2021학년도는 2학년 또는 1학년으로 할 수 있다.)	(삭제) 제16조【적용】 1. 회 장 1명 (3학년)(단, 2021학년은 3학년 또는 2학년으로 할 수 있다.) 2. 부회장 2명 (3학년 1명, 2학년 1명)(단, 2021학년도는 2학년 또는 1학년으로 할 수 있다.)	해당연도 경과
제17조	제17조【선거관리위원회】	(수정)	학생자치회

	②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현 학생회 간부 중 부장학생(3학년)으로 선거공고일에 구성한다.	제17조【선거관리위원회】 ②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현 학생회 간부 중 부장학생(3학년) 으로 현 학생자치회 3학년 학생 5~9명 으로 구성하며 선거공고일에 구성한다.	의견수렴 관련 조항 구체화
제18조	제18조【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교직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9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수정) 제18조【선거일 공고】선거일은 교직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9일 전까지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불명확한 부분 수정
제22조	제22조【입후보 등록】①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 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 제22조【입후보 등록】①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3일 5일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자치회 의견수렴
	④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직접 신고하여야 하며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수정) ④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직접 신고하여야 하며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련 근거 조항이 오류와 번호 중복 기입 오류 정정
제24조	제24조【선거운동】 ② 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재학생 중에서 10명 이하의 선거운동원과 1명의 찬조연설원을 둘 수 있다.	(수정) 제24조【선거운동】 ② 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재학생 중에서 10-5명 이하의 선거운동원과 1명의 찬조연설원을 둘 수 있다.	학생자치회 의견수렴
제25조	제25조【벽보】 ③ 벽보의 용지는 선거관리 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야 한다.	(수정) 제25조【벽보】 ③ 벽보의 용지는 선거관리 위원장 회 의 인장이 날인되어야 한다.	학생자치회 의견수렴
제26조	제26조【소견발표회】 ②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1회의 합동 소견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발표시간은 후보조마다 7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기호 순으로 한다.(단, 2021학년도 소견발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소견발표를 녹화	(삭제 및 수정) 제26조【소견발표회】 ②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1회의 합동 소견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발표시간은 후보조마다 7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기호 순으로 추첨으로 한다.(단, 2021학년도 소견발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해당연도 경과 및 학생자치회 의견수렴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위해 소견발표를 녹화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합동 소견발표회는 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녹화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합동 소견발표회에는 후보자마다 1명의 찬조연설원이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 시간은 각 7분 이내로 하되, 발표순서는 후보자의 기호 순서로 한다. (단, 2021학년도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찬조연설원의 발표는 생략할 수 있다.)	(삭제 및 수정) ③ 제2항의 합동 소견발표회에는 후보자마다 1명의 찬조연설원이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 시간은 각 7분 이내로 하되, 발표순서는 후보자의 기호 발표 순서로 한다. (단, 2021학년도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찬조연설원의 발표는 생략할 수 있다.)(단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등 불가피한 경우, 다수의 찬조연설원으로 시간이 부족할 시 생략할 수 있다.)	해당연도 경과 및 학생자치회 의견수렴
	④ 후보자는 선거운동원과 함께 등·하교 시간,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각 학급을 돌아다니면서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선거운동을 위하여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단, 2021학년도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선거운동원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19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삭제 및 수정) ④ 후보자는 선거운동원과 함께 등·하교 시간,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각 학급을 돌아다니면서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선거운동을 위하여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단, 2021학년도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선거운동원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19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단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등 불가피한 경우, 대면 선거 운동을 지양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해당연도 경과 및 학생자치회 의견수렴
제27조	제27조【투표】① 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양식은 기표식으로 한다. (단, 2021학년도는 모든 학년이 온라인 선거를 실시한다.)	(삭제 및 수정) 제27조【투표】① 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양식은 기표식으로 한다. (단, 2021학년도는 모든 학년이 온라인 선거를 실시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등 불가피한 경우, 선거의 원칙을 준수하여 온라인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해당 연도 경과 ' 및 학생자치회 의견수렴
	② 선관위는 선거일 전 2일까지 투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단, 2021학년도는 제2항의 절차를 생략할	(삭제) ② 선관위는 선거일 전 2일까지 투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단, 2021학년도	

	수 있다.)	는 제2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p>③ 투표 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시작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단, 2021학년도 코로나19의 단계에 따라 등교 수업하는 학년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각 학급에서 담임 선생님 임장하에 온라인 선거를 실시한다.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년은 각 가정에서 정해진 시간에 담임 선생님 임장 하에 온라인 선거를 실시한다.)</p>	<p>(삭제 및 수정)</p> <p>③ 투표 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시작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단, 2021학년도 코로나19의 단계에 따라 등교 수업하는 학년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각 학급에서 담임 선생님 임장하에 온라인 선거를 실시한다.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년은 각 가정에서 정해진 시간에 담임 선생님 임장 하에 온라인 선거를 실시한다.)(단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등 불가피한 경우, 선거의 원칙을 준수하여 온라인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p>	
	<p>④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 하되, 그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한다.(단, 2021학년도는 제4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수정)</p> <p>④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 하되, 그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한다.(단, 2021학년도는 제4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⑥ 후보자는 투표소마다 투표참관인을 1인씩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일 전날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선관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단, 2021학년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 수업 학급이나 등교 학급에서 투표를 실시할 경우 투표참관인 역할을 담임선생님이 대체할 수 있다.)</p>	<p>(삭제 및 수정)</p> <p>⑥ 후보자는 투표소마다 투표참관인을 1인씩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일 전날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선관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단, 2021학년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 수업 학급이나 등교 학급에서 투표를 실시할 경우 투표참관인 역할을 담임선생님이 대체할 수 있다.)(단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등 불가피한 경우, 선거의 원칙을 준수하여 온라인 선거를 실시할 시 투표참관인 역할은 담임선생님으로 대체할 수 있다.)</p>	
	<p>⑦ 선관위원은 선거인이 제시한 학생증과 투표자명부를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1매씩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증을</p>	<p>(삭제 및 수정)</p> <p>⑦ 선관위원은 선거인이 제시한 학생증과 투표자명부를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1매씩</p>	

	<p>분실한 경우 2인의 선거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단, 2021학년도는 제7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증을 분실한 경우 2인의 선거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단, 2021학년도는 제7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단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등 불가피한 경우, 선거의 원칙을 준수하여 온라인 선거를 실시할 시 확인 절차는 담임선생님이 주관할 수 있다.)</p>	
	<p>⑧ 선관위원은 투표가 끝난 즉시 투표록을 작성하여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 입회하에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단, 2021학년도는 제8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삭제 및 수정) ⑧ 선관위원은 투표가 끝난 즉시 투표록을 작성하여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 입회하에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단, 2021학년도는 제8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온라인 선거 실시 시 생략할 수 있다.)</p>	
제28조	<p>제28조【개표】① 선관위는 선거일전 2일 전까지 개표장소를 결정하고 투표가 끝나기 30분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단, 2021학년도는 온라인 선거를 실시하기에 별도의 개표장소를 설치하지 아니한다.)</p>	<p>(삭제 및 수정) 제28조【개표】① 선관위는 선거일전 2일 전까지 개표장소를 결정하고 투표가 끝나기 30분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단, 2021학년도는 온라인 선거를 실시하기에 별도의 개표장소를 설치하지 아니한다.)(단 온라인 선거 시 생략할 수 있다.)</p>	해당 연도 경과 ' 및 학생자치회 의견수렴
	<p>②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담당한다.(단, 2021학년도는 온라인 선거 플랫폼을 이용하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개표를 한다.)</p>	<p>(삭제 및 수정) ②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담당한다.(단, 2021학년도는 온라인 선거 플랫폼을 이용하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개표를 한다.)(단 온라인 선거 시 생략할 수 있다.)</p>	
	<p>③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1명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일 전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표참관인은 개표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선관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2021학년도는 담임선생님이 개표참관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p>	<p>(삭제 및 수정) ③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1명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일 전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표참관인은 개표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선관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2021학년도는 담임선생님이 개표참관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단 온라인 선거 시 생략할 수 있다.)</p>	
	<p>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가 종</p>	<p>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가 종</p>	

	<p>료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한다.(단, 2021학년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온라인 투표 결과를 즉시 발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한다.)</p>	<p>료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한다.(단, 2021학년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온라인 투표 결과를 즉시 발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한다.) 선거록을 작성하고 학교장의 내부결재를 득한 뒤, 당선증을 수여한다. 학교장의 결재 후 선거의 최다 득표자를 학생회장·부회장 당선자로 공고한다.</p>	
제29조	<p>제29조【당선인 결정】</p> <p>④ 정·부회장 후보자가 단일 후보조일 때에는 찬·반 투표를 해서 유효표의 50% 이상이 찬성표가 될 때 당선으로 하고 찬성표가 50%가 되지 않을 때는 재선거를 실시한다.</p>	<p>(수정)</p> <p>제29조【당선인 결정】</p> <p>④ 정·부회장 후보자가 단일 후보조일 때에는 찬·반 투표를 해서 유효표의 50% 이상이 찬성표가 될 때 당선으로 하고 찬성표가 50%가 되지 않을 때는 재선거를 실시한다.</p> <p>④ 정·부회장 후보자가 단독 출마인 경우 무투표 당선을 원칙으로 한다.</p>	학생자치회 의견수렴
제30조	<p>제30조【재선거 및 후보 부재 시 선출】</p> <p>③ 후보자 부재 시 2차 공고를 해 3일간 후보자 등록을 더 받는다. 2차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 때는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대의원회에서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대의원회에서도 피추천자가 없을 시에는 지도 위원회(학생인권부장, 학년부장, 학년생활지도계, 해당 학년 담임 선생님 등으로 구성)의 추천을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p>	<p>(수정)</p> <p>제30조【재선거 및 후보 부재 시 선출】</p> <p>③ 후보자 부재 시 2차 공고를 해 3일간 후보자 등록을 더 받는다. 2차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 때는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대의원회에서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대의원회에서도 피추천자가 없을 시에는 지도 위원회(학생인권부장, 생활교육부장, 학년부장, 학년생활지도계, 해당 학년 담임 선생님 등으로 구성)의 추천을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p>	업무 이동
제33조	<p>제33조【당선무효】선거운동 기간 중에 당선인이 제23조 3항과 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p>	<p>(수정)</p> <p>제33조【당선무효】선거운동 기간 중에 당선인이 제23조 3항과 4항 제24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p>	해당 조항 오기를 정정
제34조	<p>제34조【교육】</p> <p>② 선관위원장은 투표록, 선거록 및 투</p>	<p>(삭제)</p> <p>제34조【교육】</p>	해당 연도 경과

	표지를 포장하여 선거담당교사에게 제출하고 선거담당 교사는 이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단, 2021학년도는 온라인 선거 결과와 그를 기반으로 한 선거록을 작성하여 내부 결재 받는다.)	② 선관위원장은 투표록, 선거록 및 투표지를 포장하여 선거담당교사에게 제출하고 선거담당 교사는 이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단, 2021학년도는 온라인 선거 결과와 그를 기반으로 한 선거록을 작성하여 내부 결재 받는다.)	
제37조	제37조【소집】 ② 정기회의는 매 달 정해진 날짜에 회장이 소집한다.	(수정) 제37조【소집】 ② 정기회의는 매 달 정해진 날짜에 한 학기에 2회 실시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학생자치회 의견수렴
부칙	부 칙 1.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칙은 학생생활인권규정 맨 끝장에 기입함.	순서 이동
3. 학급자치회 운영 규정			
제4조	제4조【임명 절차 및 선거 방법】① 회장·부회장은 학급자치회의 직접선거와 결과에 따라 시흥가온중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한다. (단, 2021학년도 1학기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전 이어서 학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삭제) 제4조【임명 절차 및 선거 방법】① 회장·부회장은 학급자치회의 직접선거와 결과에 따라 시흥가온중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한다. (단, 2021학년도 1학기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전 이어서 학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② 2. 재적 인원과 반수 이상의 참석에 최고 득표자를 회장으로 당선한다.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며 부회장을 별도로 다시 선출한다.)	(수정) ② 2. 각 선거(회장 및 부회장 선거)는 재적 인원과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최고 득표자를 각각 대표(회장과 부회장)로 결정한다.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하며 부회장을 별도로 다시 선출한다.)	
	3. 부회장은 후보자 중 차점자로 한다.	(삭제)	
제5조	제5조【임기】연임규정 없음	(신설) 제5조【임기】	연임규정 신설

		② 1학기 회장과 부회장은 2학기에 선거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학급자치회 회장의 의무】 ① 선생님의 명을 학급 학생에게 전달하고 학급 학생들의 의사를 선생님께 건의 전달한다.	(수정) 제8조【학급자치회 회장의 의무】 ① 선생님의 명을 학급 학생에게 전달하고 학급 학생들의 의사를 선생님께 건의 전달한다. ① 학급의 대표로 교실생활 속 민주주의 체험의 장으로 학급자치회를 운영하며 총괄한다.	학급자치 운영규정 개선안
	② 선생님을 도와 학급 학생을 통솔한다.	(수정) ② 선생님을 도와 학급 학생을 통솔한다. ② 친구들과 선생님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학급자치회의 결과를 대의원회, 학생자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학교 운영에 반영한다.	
	④ 학급의 청결을 유지하고 비품을 관리한다.	(수정) ④ 학급의 청결을 유지하고 비품을 관리한다. 하며 학급 내 각 부서 활동을 지원하며 조율한다.	
4. 장애 학생 인권규정			
제5조	제5조【교육】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가 제59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정) 제5조【교육】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4조제1항 제59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법령 오기를 정정